

의안 번호	571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검 토 보 고 서

도 시 건 설 위 원 회

제31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임시회 (202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571
----------	-----

2026.03.19.

전문위원 송 세 창

1. 제안 경위

가. 제출자 : 정윤주 의원(대표발의) 외 10명

나. 의안번호 : 제571호

다. 제출일자 : 2026. 02. 25.

라. 회부일자 : 2026. 03. 10.

## 2. 제안이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진단 등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범죄예방진단 등을 통해 지정된 우범·취약지역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고, 범죄예방 강화구역에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안 제18조제4호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임.
- 아울러, 안 제20조제3항제2호나목 및 안 제33조제2항의 경찰서 명칭을 성북구 관할 경찰서로 일원화하여 조문상 표기를 정비하는 사항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편성

다. 사전협의 : 건축과

라. 입법예고 : 2026.03.03. ~ 2026.03.10. (의견없음)

마. 참고자료

- <별첨1.> 성북구 가구원 수 및 안전도 인식 현황(7p.)
- <별첨2.> 범죄예방진단 개요(8p.)
- <별첨3.> 청소년비행신고다발지 맞춤형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효과(9p.)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구청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4. <u>우범지역 및 취약지역</u> 도시환경디자인 사업</p> <p>5. ~ 7. (생략)</p> <p>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1. (생략)</p> <p>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p>	<p>제1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범죄예방진단 등을 통해 지정된 우범지역</u> --- <u>취약지역, 범죄예방 강화구역에서의</u> --</p> <p>--</p> <p>5. ~ 7. (현행과 같음)</p> <p>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p> <p>-----</p> <p>-----</p>

<p>야 하며, 공모 또는 관련기관 추천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p> <p>가. (생략)</p> <p>나. <u>서울 성북경찰서 및 종암경찰서</u> 생활안전 담당 부서장 각 1명</p> <p>다. (생략)</p> <p>④ (생략)</p> <p>제33조(협력체계 구축)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추진할 경우에는 <u>서울 성북경찰서, 서울 종암경찰서</u>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p> <p>③·④ (생략)</p>	<p>-----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u>서울특별시 성북구 관할경찰서</u> ----- -----</p> <p>다.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제33조(협력체계 구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성북구 관할경찰서</u>----- -----.</p> <p>③·④ (현행과 같음)</p>
--	--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범죄예방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정책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안 제18조제4호** : 기존 조문의 “우범지역“을 “범죄예방진단 등을 통해 지정된 우범지역” 으로, “취약지역“을 “취약지역, 범죄예방 강화구역에서의” 로 정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 대상 지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이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개념을 반영한 것으로, 경찰의 범죄예방 진단자료[범죄위험도 예측시스템(Pre-CAS)<sup>1)</sup>,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sup>2)</sup>] 등을 활용하여 대상지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한정된 예산을 고위험 지역에 집중 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의 합리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관내 사례로 성북경찰서가 성북로2길 38 일대의 청소년 비행 신고 다발지에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한 결과 112신고 건수가 **41.6% 감소(2024년 9~10월 125건 → 2025년 9~10월 73건**, 성북경찰서 자료)한 사례는 본 개정안의 정책적 필요성을 참고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음.

▶ **안 제20조제3항제2호나목 및 안 제33조제2항** : 기존 조례에 고유 명칭으로 명시된 경찰서(“서울 성북경찰서 및 종암경찰서”, “성북경찰서, 서울 종암경찰서”)를 “성북구 관할경찰서”로 일원화하여 조문상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

특정 기관 명칭을 직접 명시하는 방식은 경찰 조직 개편이나 관할구역 조정 시마다 조례 개정이 수반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 관할기관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합리적이며 자치법규의 안정적 운용에도 부합함.

- 
- 1) 치안데이터와 공공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하여 범죄위험도를 예측하고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
  - 2) 범죄정보 데이터와 전자지도를 결합해 범죄유형별 발생지역과 범죄취약지역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

## 6. 종합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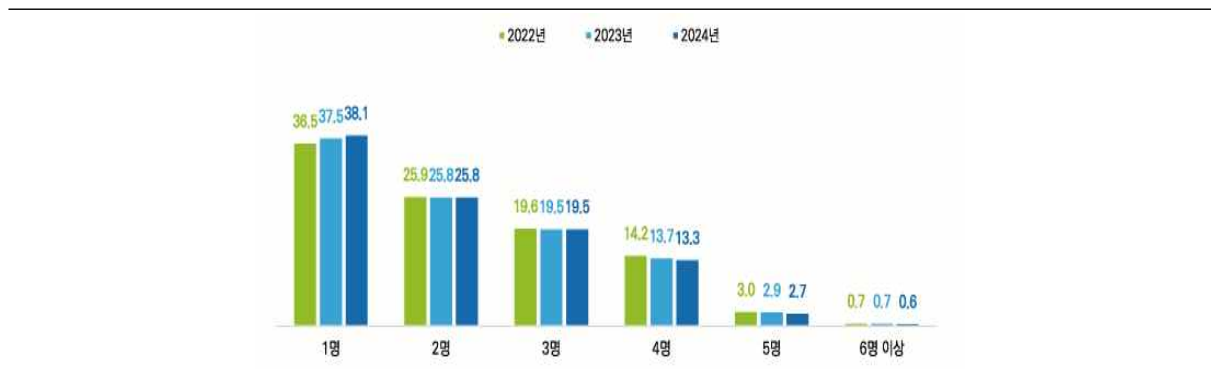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진단 등을 통해 지정된 우범·취약 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공공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찰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 최근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범죄 발생 이후의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본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 흐름을 반영하여 범죄예방진단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 관내에서 추진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운영 성과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특히 「2025 성북구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결과보고서(성북구청)」에 따르면 성북구는 1인 가구 비중(38.1%)이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생활안전 시설(방범용 CCTV 및 보안등·공원등) 확충에 대한 주민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본 개정안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정비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디자인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별첨1.> 성북구 가구원 수 및 안전도 인식 현황

- 2025년 성북구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성북구의 평균 가구원은 2.2명이며,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38.1%)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

<가구원 수별 가구 분포>

(단위 : %)



출처 : 성북구청(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결과보고서)

- 성북구 안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전반적인 성북구의 안전’ 점수는 6.84점이며, ‘강도, 소매치기, 성추행 등 다양한 범죄 피해’ 점수는 6.63점으로 범죄피해에 상대적으로 불안한 것으로 분석

<성북구 안전에 대한 인식>

(단위 : 10점 만점의 점)



출처 : 성북구청(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결과보고서)

- ‘도시 안전을 위한 지원사항’으로 ‘방법용 CCTV 확충’ 및 ‘보안등, 공원등 확충’ 등을 응답하였으며, 남성보다 여성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

## <별첨2.> 범죄예방진단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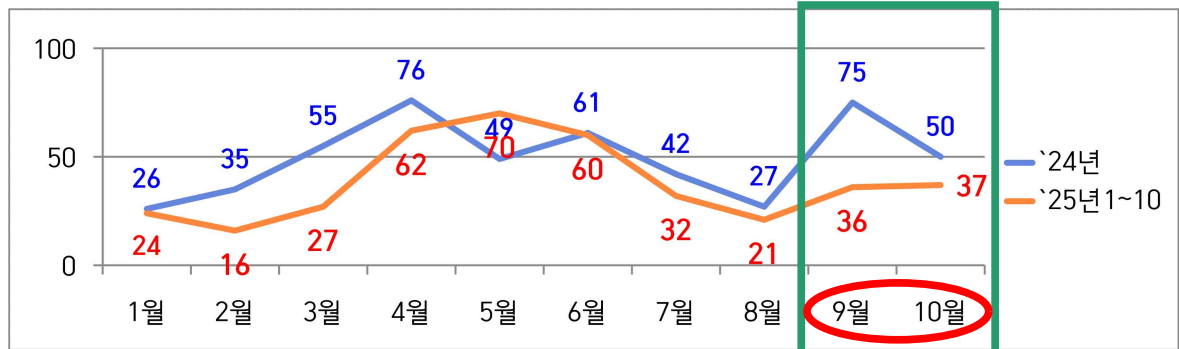
- **(정의)** 범죄예방진단이란 특정 지역, 시설, 공간을 대상으로 범죄 발생 가능성과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평가하여,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범죄 자체를 억제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수단을 의미함.
- **(목적)** 범죄예방진단은 ①범죄 발생 사전 차단 ②주민의 체감 안전도 향상 ③지자체·경찰·주민 간 협력 기반 마련 ④범죄 발생 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을 통해 예산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 **(대상)**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고 다수가 이용하는 ①주거지역(원룸촌,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②골목길·통학로·공원·지하보도 ③상가·전통시장 ④공공시설(주차장, 화장실, 지하철 출입구 등) ⑤범죄 취약시설 (여성·아동·노인 이용 공간)을 대상을 주로 진단
- **(절차)** ①112 신고 건수, 민원등 취약지 확인 ②치안통계 자료 분석 및 활용하여 취약지 선정 ③범죄예방진단팀 현장 확인, 물리적 환경 특성 진단 및 분석 ④각종 데이터 및 현장 확인 결과 등 종합적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개선·순찰 등 집중관리 여부 결정
- **(평가 및 조치)** 범죄예방진단을 통해 A구역(안전)과 B구역(위험)로 구분하며, 진단 이후 범죄예방협의체 구성 및 진단결과 공유·논의, 취약요소 개선 및 유지·관리 진행
- **(활용)** 범죄예방진단은 ①범죄예방 시설 설치 근거 자료 ②지자체 안전 정책 및 예산 편성 기초자료 ③경찰 순찰 강화 구역 선정 ④생활안전 조례·계획 수립에 활용 가능

<별첨3.> 청소년비행신고다발지 맞춤형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효과

- (배경) '25. 5. 20. 경찰전문관리시스템(PORMS)를 통해 청소년 비행으로 인한 범죄불안 민원 청취하여 범죄예방전략회의에 상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
- (내용) 성북구 성북로2길 38 일대에 7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비행신고 다발지 환경개선 사업 추진.
- (결과)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후 25년 9, 10월 청소년 비행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52건(41.6%) 감소.

<112 신고 건수 분석>

(단위 : 건수)









출처 : 성북경찰서 내부자료

- (효과) 관련 신고 및 출동 후 청소년들과 마찰이 감소하였으며,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 조치를 통해 치안만족도 향상.

○ (설치 사례) 골목길 등 범죄 취약지역에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사례>

개선 전	개선 후
	
	
	

출처 : 성북경찰서 내부자료